(건축-002) 교회 신축공사현장 거푸집 전도사고

공사명	○○ 시내교회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10월 14일(토) 14:20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충청북도 제천시	사고 종류	넘어짐(전도)	
구조물 손실	거푸집	인적피해	사망 1명	
장비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〇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용도 : 문화 및 집회시설

연면적 : 296㎡규모 : 지상 3층공사기간 : 2016.8∼

2) 사고경위

○ 건축물 외벽 및 내부벽체의 콘크리트 타설(약 100㎡)을 마치고, 건축물의 출입구에 약 5㎡의 단독벽체(연장6m, 높이4m, 폭0.2m)를 타설하던 중 거푸집 벽체가 외측으로 전도되면서 벽체외부 쌍줄비계에서 거푸집 두드리기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

3) 사고원인

-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은 1층 벽체구간의 외벽 및 내부벽체 2.4m 높이까지 계획되었으나, 사고가 발생한 거푸집은 당일 추가로 단독벽체(연장6m, 높이4m, 폭0.2m)의 4m 높이를 일체로 타설하였으며,
- 거푸집의 내·외부 전도방지 지지대(동바리)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(전용 받침물 미사용 및 고정 상태 미흡)한 상황에서 작업 중 진동, 충격, 콘크리트 편심타설(벽체 하부 계량기 단자함 설치 공간으로 일부 모르타르 유출) 등의 영향에 의한 침하 및 유격 발생으로 거푸집이 전도된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건설공사 중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, 콘크리트 타설로 인해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, 설치하여야 한다.
-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